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	-----

제출년월일 : 2000년 2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 개정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6,002호/ '99.8.31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72호 / '99.12.31 개정)이 개정되어 회의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6,691호 / 2000.1.8)됨에 따라 교육위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함(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2).
 - 의정활동비 : 월 600,000원 → 월 900,000원
 - 회기수당 : 일 60,000원 → 일 80,000원
 - 국외여비 :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함.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발체) : 붙임 참조
- 다. 예산조치사항
 - 의정활동비 등 추가소요 인상분은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 하되,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중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하고,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을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2]중 일비(1일당)란과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1중 “일비·숙박비·식비”를 “숙박비·식비”로 한다.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②-③ (생략)</p> <p>[별표 2] 국의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p>	<p>제1조(목적)</p> <p>제3조(회의수당 지급)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p> <p>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회의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80,000원..... ②-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2] 국의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일비(1일당)</th> <th style="width: 15%;">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의장· 부의장</td> <td>가등급 30</td> <td>가등급 169</td> </tr> <tr> <td>나등급 30</td> <td>나등급 123</td> </tr> <tr> <td>다등급 30</td> <td>다등급 97</td> </tr> <tr> <td>라등급 30</td> <td>라등급 83</td> </tr> <tr> <td rowspan="4">위원</td> <td>가등급 25</td> <td>가등급 137</td> </tr> <tr> <td>나등급 25</td> <td>나등급 99</td> </tr> <tr> <td>다등급 25</td> <td>다등급 76</td> </tr> <tr> <td>라등급 25</td> <td>라등급 65</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일비·숙박비·식비의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의 비고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 2. (생략)</p>	구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30	가등급 169	나등급 30	나등급 123	다등급 30	다등급 97	라등급 30	라등급 83	위원	가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25	나등급 99	다등급 25	다등급 76	라등급 25	라등급 65
구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30	가등급 169																				
	나등급 30	나등급 123																				
	다등급 30	다등급 97																				
	라등급 30	라등급 83																				
위원	가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25	나등급 99																				
	다등급 25	다등급 76																				
	라등급 25	라등급 6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일비(1일당)</th> <th style="width: 15%;">숙박비(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의장· 부의장</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40</td> <td>가등급 186</td> </tr> <tr> <td>나등급 135</td> </tr> <tr> <td>다등급 107</td> </tr> <tr> <td>라등급 91</td> </tr> <tr> <td rowspan="4">위원</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35</td> <td>가등급 151</td> </tr> <tr> <td>나등급 109</td> </tr> <tr> <td>다등급 84</td> </tr> <tr> <td>라등급 72</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숙박비·식비.....</p> <p>2. (현행과 같음)</p>	구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위원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p>비고 : 1. 숙박비·식비.....</p> <p>2. (현행과 같음)</p>						
구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위원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부칙 제2항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회의수당</u>”이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의수당</u>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회기수당</u>”</p> <p>.....</p> <p><u>회기수당</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p> <p>.....</p> <p>1.</p> <p>.....</p> <p>..... <u>회기수당</u></p> <p>.....</p> <p>2.</p> <p>.....</p> <p>..... <u>회기수당</u></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